#### 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 하기 위해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<u>신탁업자명</u>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:02-2004-8936/0991

## 1.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 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-파 생형)
- 다. 보관 •관리기간: 2016.01.01 2016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 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한 국투자증권,대신증권,미래에셋대우,유진투자증 권,메리츠종합금융증권,NH투자증권,KB증권(구현 대),SK증권,삼성증권,동부증권,KB증권(구케이비 투자),크레디트스위스증권,골드만삭스증권,하이 투자증권,미래에셋증권,키움증권,리딩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

## 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| 변경<br>일자       |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|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후   |  |  |  |
| 2016.<br>02.18 | 법개정등<br>반영<br>제34조        | (추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채권의 신용등급이<br>제 1 항제 1 호에서 정<br>한 신용등급 미만으로<br>하락한 경우(~)신탁업<br>자와 협의하여 유예<br>기간 연장 등 필요한<br>조치를 결정 하여야<br>한다. |  |  |  |
|                | 법개정<br>사항반영<br>제36조       | (추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, 법 제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<br>기구의 (~) 투자하는<br>날을 기준으로 한다.   |  |  |  |
| 2016.<br>09.28 | 환매<br>조건부<br>매수추가<br>제34조 | (추 가)<br>3. 투자신탁재산<br>으로 보유하는 증<br>권의 대여 | 3. 환매조건부매수<br>(증권을 일정기간 후<br>에 환매도할 것을 조<br>건으로 매수하는 경우<br>를 말한다.)  |  |  |  |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a href="http://dart.fss.or.kr">http://dart.fss.or.kr</a> 을 통해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 5.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 PUBLIC\_HSS FS SEL

# 6.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| 변 <sup>:</sup> |          | 변경후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|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
| 회계<br>감사인명     | 계약<br>기간 | 감사<br>보수 | 계약<br>방법 | 변경일 | 회계<br>감사인명 |   |   | 계약<br>방법 |
| 안진회계<br>법인     | 1년       |          | 서면<br>계약 | 1   | -          | ı | ı | 1        |

\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 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
- 부합함
- 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- 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 없음
- 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- 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 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- 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 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 없음
- 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□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 없음

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